보이스피싱 조직의 ‘쪼개기 송금’은행 업무방해 아니다… 대법 ‘사람 아닌 기계 속인 건 죄 아냐’

〈서울 서초동 대법원〉

기계를 속이는 것은 죄가 될까. 적어도 ‘위계(속이는 행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대상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건당 30만원의 수당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가로챈 피해자들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가로챈 돈을 송금한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기기에 설정된 '1인 1회 100만원'이라는 송금 한도를 회피해 거액을 한꺼번에 송금하려고 주범으로부터 전달받은 494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9차례에 걸쳐 100만원씩 '쪼개기 송금'을 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형사배상명령을 인용해 1억여원의 배상명령도 내렸다. A씨가 실제로 얻은 수익은 '건당 30만원'의 수당에 불과했지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해 범죄 피해액 전체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혐의 중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송금 과정에 은행 직원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계란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A씨의) 행위로 인해 업무 관련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경향신문&경향닷컴)